
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

2026. 10. 1.

관 계 부 처 합 동

I. 추진배경

- 청년층의 사회 진입과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은 부모와 자녀 세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인 만큼,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
 - 종전 아동지원 프로그램은 단기적·소비성 수당 지급 위주로 설계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한 장기적 목돈 마련 측면에는 한계
 - 청년들이 사회 진입시, 학자금·주거·취업준비*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‘최소한의 자산’을 갖고 시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
- * (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) 연 727만원, (취업 사교육비 평균 지출액) 연 455만원, (평균 월세비용) 보증금 2,900만원, 월세 연 492만원, (평균 생활비) 연 2,600만원

- 주요국도 아동기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장기 자산형성 사업 시행 중
 - 세부 운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으나, 대부분 ▲18세 미만 아동 대상, ▲재정·세제 지원, ▲자본시장 활용 등의 측면에서는 유사

- ▶ (미국 Trump Account, '26.7월~) ▲모든 출생아에 초기 투자금 약 135만원(\$1,000) 지원, ▲18세까지 중도해지 제한, ▲투자수익 과세이연, ▲인덱스 ETF(연간 비용 0.1% 이하) 투자 허용
- ▶ (캐나다 Education Savings Program, '98년~) ▲18세 미만 아동에 20% 매칭으로 연 최대 약 48만원(C\$500) 지원(저소득층은 정액지원 추가), ▲운용수익 과세이연, ▲적격 투자자산 설정
- ▶ (이스라엘 Savings Plan, '17년~) ▲18세 미만 아동에 월 약 2.5만원(58NIS) 정액 지원 ▲은퇴 후 연금 전환시 비과세, ▲은행 예금형과 펀드형(저/중/고위험) 중 선택 운용

- 정부도 청년기 첫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‘우리아이자립펀드’를 국정 과제로 선정(82-4 과제)하고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
 -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에 가입하고,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·투자하여 목돈을 형성
- ※ 연 200만원씩 19년간 적립·투자, 수익률 6% 가정 → 만기시 적립금 약 7,000만원 (연평균 약 3조원 유입, '40년대 중반 총 적립규모 약 83조원 추정(재정지원 대상))
- ☞ 연내 재정 및 세제 지원방안 확정에 이어, 관계기관·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가입·운용·해지 등 세부 운영방안 마련 추진

II. 재정 및 세제 지원방안

□ '27년 정부 예산안 : 총 1,465억원 (미래대응기금 內 청년계정)

-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아동 명의 펀드에 지원하고, 부모의 추가 납입도 허용
- '26.9월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만 18세까지 최대 年 120만원 (정액, 중위소득 50%↓) 또는 年 100만원(매칭, 중위 50~150%) 지급
 - * (전체 출생아 수 추정) '26.9월~'27년 31.9만명, '28년 24.8만명, '29~'32년 26~27만명
- 납입기간 최대 19년, 납입한도(부모납입금+정부지원금)는 年 200만원 (→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은 자유롭게 허용)

< 정부지원금액 및 납입한도(안) >

소득수준	지원금액(연간)	추가납입 (연간, 최대)
중위소득 50%↓	120만원 (정액)	80만원
중위소득 50%~100%	부모 50만원 + 정부 100만원(최대) (1:2 매칭)	50만원
중위소득 100~150%	부모 100만원 + 정부 100만원(최대) (1:1 매칭)	-
중위소득 150%↑	없음	200만원

*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('26년, 월소득) : 420만원^{2인}, 536만원^{3인}, 649만원^{4인}

-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 소득심사 등 정부지원금 지급·관리

□ 세제 지원방안 : 이자·배당소득세 비과세 추진

- 전용계좌를 통해 '우리아이자립펀드'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·배당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 부여
- 상품 가입 후 만 18세까지 납입한 부모납입금 + 정부지원금에서 발생한 모든 투자수익 비과세*
 - * 만 19세 이전 중도해지시 비과세 상당액 추징(단,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예외 인정)
- 납입기간(최대 19년*) 경과 후 바로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(예: ~만 34세) 비과세 혜택 적용
 - * 만 19세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은 제공되지 않으며, 추가 납입도 제한

Ⅲ. 펀드 운용방향(안)

☐ 가입 및 해지 : '26.8월 이전 출생아 임의가입 허용, 중도해지 제한 등

- **(임의가입)** 재정지원 대상이 아닌 ①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 아동, ②'26.8월 이전 출생아도 원하는 경우 펀드 가입·납입* 허용 검토
 - * 임의가입자의 자율납입분(연 200만원 한도 동일 적용)에 대해서도 이자·배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부여
- **(중도해지)** 장기투자를 통한 복리효과, 재정 매칭 지원 등을 감안, 부모의 중도해지는 부득이한 사유*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
 - * [청년미래적금 예시]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퇴직, 사업장 폐업, 상해·질병 등
- **(만기 인출)** 개인별로 자금 수요가 다르고 시장 여건도 가변적인 만큼, 만 19세 만기 도래 이후 탄력적인 인출 허용(예: ~만 34세)
 - 만기 후 여타 자산형성 사업, 금융교육·재무상담 프로그램과 연계 등을 통해 생애 종잣돈으로서 기능 강화

☐ 펀드 운용 : 수익성·규모의 경제, 적격 운용자 요건 등 고려

- **(펀드구조)** 규모의 경제(수익성), 최소한의 자산형성 수준 달성(보편성) 등의 측면을 종합 고려하여 세부 구조 논의·설계
- **(운용)** 해외 사례,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등을 감안하여 투자대상 자산* 등을 구체화하고, 책임성·전문성 등 적격 운용자 요건 검토
 - * [국민참여형국민성장펀드, 코스닥벤처펀드, (구)소득공제장기펀드] 주투자대상에 대한 최소 투자비율 설정(40~60%) / [퇴직연금] 주식형 펀드 등에 70%까지 투자 가능

⇒ 정부 예산안 및 「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」 국회 논의와 병행하여, 관계기관·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펀드 운용방안 구체화 추진

- 전산시스템 구축, 실무준비 등을 거쳐 **내년 하반기(목표) 펀드 출시**